2. 建設技能人力 需給 圓滑化 對策

資料提供 : 建設部

Ⅰ. 수급동향과 전망

가. 최근의 고용동향

○ 노동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활동 인구증가는 계속 둔화 추세

	'89	'90	'91(P)
-경제활동인구증가율(%)	3.8	2.9	2.8
-실업율(%)	2.6	2.4	2.3

○ 건설업부문은 '89년 이후 건설경기 활황으로 취업인구 증가율과 노임상승율이 타 부문에 비해 크게 증가

-취업자 증가율(%)	'89	'90	'91(P)
(건설업)	11.3	17.5	15.2
(제조업)	3.7	0.1	1.8

-노임 상승율(%)	'89	'90	'91
(건설업)	31.1	40.0	25.4
(제조업)	25.1	20.2	17.1

※ 제조업은 월평균 임금액 상승율임.

〈건설업 취업자의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총취업자 (A)	건설업 (B)	증가율	비 중 (B/A)	제조업 (C)	증가율	비 중 (C/A)	증 감 내 역		
								총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88	16,870	1,024	11.3	6.1	4,667	5.7	27.7	561	104	251
'89	17,511	1,140	11.3	6.5	4,840	3.7	27.6	641	116	173
'90	18,036	1,339	17.5	7.4	4,847	0.1	26.9	525	199	7
'91 (P)	18,575	1,543	15.2	8.3	4,936	1.8	26.9	539	204	89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나. '92 수급 전망

〈전반적인 인력수급 상황〉

○ 수요측면에서는 안정적 성장관리로 전체적인 면에서 '91년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 8.6%〈'91〉 → 7%('92)
- 그간 경기과열에 따라 높은 인력수요를 보이던 건설업부문의 적정관리와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강화

○ 공급측면에서는 군보충역, 재소자 등의 투입과 여성 및 고령인력의 활용확대로 일부 호전이 예상되나, 고학력인구의 증가. 젊은층의 3D 기피 경향 심화 및 선거에 따른 일부 산업인력의 유출 등 애로요인도 있음.

〈건설업 부문〉

○ 금년도 건설인력 수요증가는 그간의 건설경기진정대책의 효과로 '91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특히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축부문의

인력수요가 상당히 둔화될 전망

○ '92 건설업 취업자 증가는 2.5% 수준 예상('92 경제운용계획에 반영)

	'90	'91	'92전망
-건설업취업자(천명)	1,339	1,543	1,582
(증가율)	(17.5)	(15.2)	(2.5)

Ⅱ. 수급상의 애로요인

○ 건설산업의 특성상 옥외에서의 중노동, 원격지 이동근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의 상존, 비 상시고용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젊은 층의 건설현장 근무 기피

-건설재해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재해비중(%)	'88	'89	'90	'91(1~9)
(건설업)	21.8	23.0	27.9	32.1
(제조업)	58.9	56.5	51.8	47.8

※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현상 심화

건설업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기능인력)[1]	21.7	34.0	28.9	15.4
제조업	6.0	20.0	48.0	28.0
	47.3	31.0	15.5	6.2

※ 자료 : 경제기획원, 제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보고, 1987.

주 : 1) '91.4 현재 시공중인 대한주택공사 27개 아파트공사 현장 표본조사 자료

○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기피는 물론 노동생산성도 저조

-일요일 동원인력이 평일의 30% 수준에 불과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88년 현재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

	'86	'87	'88	'89	'90
한국(A)	783만원	877	1,009	1,211	1,631
일본(B)	2,503만원	3,250	2,996	–	–
A/B	31.3%	27.0	33.7	–	–

※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 서비스업은 선호하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하는 사회 일반적 의식성향 팽배(3D기피 현상)

○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기능인력 유치는 물론, 양성에 필요한 훈련생 확보도 원활치 않으며 양성후에도 타 산업 또는 업체로 전출이 많아 업체에서 훈련 실시를 기피하는 등 기능인력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미약함.

Ⅲ. 주요 추진시책

〈기 본 방 향〉

○ 기능인력 양성확대

－사업체 자체양성, 공공직업훈련 확대 등

○ 신규·유휴인력의 적극 흡수

－근로조건 개선, 직업안정망 강화, 기능인력 우대정책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유출 방지

○ 인력수요 절감

－조립식 공법개발 및 기술개발촉진 지원

가. 기능인력 양성확대

〈기관별 양성인원 실적 및 계획〉

구 분	'90	'91 계획	'92 계획
계	17,678	25,863	31,320
공공훈련	10,132	11,220	12,220
사업내훈련	2,641	7,319	10,800
인정직업훈련	4,905	5,000	6,000
농어민직업훈련	—	1,948	1,900
전기공사협회	—	376	400

※ '91.11월 현재 약 92% 양성실적을 보이고 있음.

(1) 공공훈련 강화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법무부, 지자체 등 직업훈련 확대 :
10,220명('90) → 11,220('91) → 12,220('92)

○ 위탁훈련을 위한 업종별 공공직업훈련원 건립(10개) 추진
(건설직종전문훈련원 1개소 포함)

○ 미진학 인문계 고교생들의 직업훈련실시 확대 추진 : 3학년 미진학자 대상으로 6개월 수준의 기업위탁 단기 직업교육과정 개설

(2) 건설업체 자체양성 확대

○ 건설업체 기능인력 양성의무 강화
- 사업내 직업훈련비율 상향 조정 :
임금총액의 0.256%('90) → 0.578%('91) → 0.908%("92)
- 대형건설업체가 기능인력양성의무 불이행시 직업훈련분담금 30% 추가 징수 ('92)

○ 기능인력양성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 기능인력 양성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양성비용의 10%('90) → 15%('91)

－기능인력양성 업체에 양성비용의 10배를 도급한도액 산정에 반영('90. 6)

－기능인력양성실적을 우수건설업체 지정 평가요건에 포함시켜 공사수주상 혜택부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계획)

－직업훈련분담금에서 공제하는 훈련비 인정범위의 지속확대

• 1인당 표준훈련비 인상 : 1,749천원('90) → 2,081천원('91) → 2,582천원('92)

•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당, 재해보험료 전액 인정('91)

나. 신규·유휴인력 흡수

(1) 가용인력의 활용

○ 군인력 활용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보충역 채용 인원 배정 : 72개 업체, 1,447명

－군합동공사 확대 : 논곡－안산간 도로공사(225명) 등

○ 여성 및 재소자 활용 추진

－여성건설기능인력의 양성 확대 : 42명('90) → 599명('91)

－재소자 활용확대 : 180명('91.10) → 600명('92.3 이후)

○ 단순, 경노동직종에 고령자 채용 권장

(2) 구인·구직 연결기능 강화

○ 대한건설협회에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중('90.4)

○ 노동부 직업안정망 기능보강('91.11)

－읍·면·동에 "취업상담창구"(3,558개소) 개설

－시·군·면에 "취업정보센타"(273개) 개설

○ 대도시 구청 등(86개소)에 취업알선전산망 연결('92)

→ 시·군·구까지 확대계획('93)

(3) 소비성 서비스부문의 규제강화

○ 사치성 유흥업소 등에 대한 세제상 규제강화('90.12)

○ 과표현실화 등 세무관리 강화

다. 건설기능인력 사기진작('91.6 방안 마련 시행중)

(1) 기능인 우대 및 자긍심 고취

○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92.6)

－주관 : 대한건설협회

－측정종목 : 8개(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조적, 미장, 형틀, 건축목공, 창호제작)

－포상 : 건설장관 표창(1위), 대한건설협회장 표창(2·3위)

상금수상 및 산업시찰 실시(부부동반)

－혜택 : 1위 입상자(기능사 2급 자격증 부여)

2·3위 입상자(기능사 2급 실기시험 면제)

○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제 실시('92.6.18 건설의 날 행사시)

－대상 :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산하건설단체 추천 우수건설근로자

－훈격 : 건설부장관 표창

○ 건설기능인 명장선정 활성화('92)

－대상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최고수준의 기능보유자

－시·도지사가 노동부에 명장선정 추천시 산하단체 및 공사에서 적극 추천토록 함.

※ 기능장려법 시행령(제5조) 개정('91.4)

○ 금융기관 대출시 기능인 우대 : 생활안정 자금 및 주택자금을 기능인(기능장 및 기능사 1급)에게 우선 대출 → 기능사 2급까지 확대

(2) 근로조건 개선 유도

○ 건설현장내 후생복지시설 확충 : 샤워장, 탈의실, 숙소 및 간이휴게실 설치('9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반영)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시방서 작성지침 시달(각부처, 지자체 등 109개 기관 : '91.7)

○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실시 유도 : 고속도로 건설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실시중(도로공사)

○ 원격지 이동근로자를 위한 장거리공중전화 사전 설치유도 : 대규모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주택공사)

(3) 건설업 이미지개선 적극 추진

○ 젊은층 유입을 위한 홍보만화 제작·배포 : 10,000부('92. 2)

○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건설업의 매력 홍보('92. 5 이후)

라. 인력수요 절감 방안 강구

(1) 조립식 공법개발

○ 조립식주택 건설확대 : 22천호('90) → 46천호('91) → 75천호('92)

○ 조립식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 1,500억원('92)

○ 조립식 주택건설업체에 공영개발택지 우선공급('91. 3)

(2) 표준화 및 기술개발촉진 지원

○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설계 유형축소('91. 3) : 60종 → 15종

○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세액공제 : 10%('90) → 15%('91)

(3) 근로생산성 증대 및 건설재해율 감소방안 마련 추진('92. 6)